##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524

발의연월일: 2022. 5. 6.

발 의 자:한병도·고용진·김승원

송갑석 • 양정숙 • 어기구

오영환 • 이용빈 • 장철민

정태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시행중임.

그런데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적 개 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에 있어 검사의 경유절차를 삭제하고,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와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8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 법률 제 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체 없이 검사에게"를 "48시간 이내에"로,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를 "청구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가 제2항에 따라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을 "지방법원"으로, "제2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를 "법원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 또는 그 신청을"을 "청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장에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

- 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의3(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피해자의 신원 등 누설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 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 제20조의3(불이익처분의 금지 위반죄) 제1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	①
를 하였을 때에는 <u>지체 없이</u>	<u>48시간 이내</u>
<u>검사에게</u>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u>에</u>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	
사에게 <u>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u>	- <u>청구하여야</u> <u>이 경우 제4</u>
<u>하여야</u> 한다. <u>&lt;후단 신설&gt;</u>	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
	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
	<u>다.</u>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	<u>&lt;삭 제&gt;</u>
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	
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	
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	③
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u>제2항에</u> 따라 청구된	<u>제1항에</u>
기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	

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u>검사</u> 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하면 <u>직권 또는</u>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 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 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u>청구 또는 그 신청을</u>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4	<u>지</u> 병	<u> </u>
	<u>제1항의</u>		
ᆀ	<ul><li>⑤ (현행과 끝</li><li>8조(잠정조치의</li></ul>		① 거시
<b>/</b>	또는 사법경		
	<u>법원에</u>		
	②		
			- <u>청구를</u>
	< <u>식</u> 제>		

제17조의2(피해자의 신원과 사생

<신 설>

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스토킹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 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 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 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 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 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 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3(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 고 있는 자는 스토킹범죄와 관 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

	<u>니 된다.</u>
<u>&lt;신 설&gt;</u>	제20조의2(피해자의 신원 등 누
	설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u>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u>
	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
	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
	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
	을 공개한 자
<u>&lt;신 설&gt;</u>	제20조의3(불이익처분의 금지 위
	반죄) 제1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u> </u>